

대전고등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나10864(본소), 2022나10871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공동원가분담금청구]

재판경과

대전고등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나10864(본소), 2022나10871(반소) 판결
대전지방법원 2022. 1. 13 선고 2019가합108422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현, 이정은

변론종결 2023. 4. 5.

판결선고 2023. 4. 19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. 1. 13. 선고 2019가합108422(본소), 2020가합 102888(반소)
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의 회생회사 B 주식회사(이하 ‘B’이라 한다)에 대한 회생채권은 605,848,297원임을 확정한다.

반소: 원고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에게 413,417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413,417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24 내지 3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

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문 제2면 표 안 첫 머리에 ‘제1장 총칙’을 추가하고, 제3면 표 아래 제7행의 ‘2019. 12. 27.’을 ‘2019. 12. 17.’로, 같은 면 표 아래 제7, 8행의 ‘개시결정을 하였다’를 ‘개시결정을 하였으며,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’로, 제4면 제7행의 ‘15호증’을 ‘15, 16호증’으로, 제5면 제11행의 ‘피고에게’를 ‘B에게’로, 같은 면 제14, 15행의 ‘추가공사대금’을 ‘추가공사대금을’로, 제6면 표 아래 제7행의 ‘아무런 설명’을 ‘납득할만한 설명’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현우, 판사 모성준, 판사 이해성